

의안번호	제 64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2022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
결정의 건

제 안 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안연월일	2022년 9월 15일

2022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

의안 번호	64
----------	----

제안연월일 : 2022년 9월 15일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사유

-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행정사무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022년도 충청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의 회기 중 그 기간을 결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기 간 : '22. 11. 9.(수) ~ 11. 22.(화), 14일간
 - ※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('22. 11. 8. ~ 12. 16.) 중 14일 이내 실시
- 행정사무감사 진행일정
 -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: 제40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(9.15.)
 -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수립 : 제403회 정례회 회기 중
 - ※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 작성
 -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: 제4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(9.28.)
 - 행정사무감사 실시 : 제405회 정례회 회기 중(11.9. ~ 11.22.)
 -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: 제4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(12월)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붙임
- 비용추계 : 해당없음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49조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)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·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41조(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) ①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.

② 지방의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 한다.

③ 지방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휴회 중인 때에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는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.

④ 감사 또는 조사는 제43조제4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에 따른다.

⑤ 지방의회위원은 감사 또는 조사에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.

□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

제2조(감사) ① 충청북도의회(이하 “의회” 라 한다)는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 라 한다) 및 충청북도교육청(이하 “교육청” 이라 한다)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(이하 “감사” 라 한다)를 행한다. 다만,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의 기간중 14일 이내로 실시하되,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 (이하 "감사위원회" 라 한다)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한다.